

2006 ~ 2010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2006. 4

목 차

I. 수립배경	1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1
2. 1차 기본계획의 평가	2
II. 농업·농촌·여성농업인의 여건변화	5
1. 농업·농촌 환경변화	5
2. 여성농업인 여건전망	6
III. 2차 기본계획의 추진내용	8
1. 비전과 목표	8
2. 추진방향	9
3. 세부계획	11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11
나.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29
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40
라.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56
IV. 추진체계	61
V. 중장기 투융자계획	62
1. 연차별 투융자 계획	62
2. 자원조달 방안	62
부록	
· 과제별 담당부서	63
·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현황	69
· 2차계획 수립 추진경과	70

I. 수립 배경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05.11.5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참여근거를 마련

—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기본계획> —

-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지위향상, 삶의질 제고를 위해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01~'05년)'을 수립 추진
 -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농림부·농업관련기관·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

- 농업·농촌 및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2차 기본계획('06~'10) 수립 필요
 - 여성농업인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남녀 농업인이 파트너쉽을 이루어 농업발전을 함께 견인토록 하는 지원 필요
 -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농정방향과 연계하여 여성농업인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농업인이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정책 추진
 -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여성농업인정책의 주요과제를 반영하여 추진

—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 현황> —

- 여성 농업 주종사자 : ('01) 1,204천명(52.9%) → ('04) 1,067(53.0)
- 여성 농업 경영주 : ('01) 217천명(16.1%) → ('04) 207(16.7)
- 여성농업인 농업노동 기여도('03) : 80%이상 담당 31%, 절반 담당 44.4%
 - * 여성 기여도가 높은 과수·원예·축산·친환경농업 비중의 증가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산물가공·유통의 확대에 따라 인적자원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 => 따라서 체계적인 여성농업인정책 추진 필요

2. 1차 기본계획의 평가

성 과

①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이 확대되고 정책 대상자로 여성 선발 우대제도 채택

-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획능력 강화 훈련, 리더쉽 증진 교육 실시 등 여성농업인 교육의 체계화 시도
- 후계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여성우대 제도는 기존의 불평등 관행을 개선하는 조치로 평가

* 후계여성농업인 선정 현황('01~'05) : 1,370명(전체 9,855명중 13.9%)

②

여성농업인의 농정참여가 확대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의식도 확산

-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이 늘어나면서 여성농업인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 확대
- 협동조합에 여성조합원 수가 크게 늘어나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여성대의원 확대 기반 마련

* 협동조합 여성조합원 비율 : ('01) 19.6% → ('05) 25.3%(510천명)

- 여성농업인대회 개최 지원, 우수 여성농업인 표창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 의식을 고취
- 여성농업인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모델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확대

*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 ('02) 4개소 → ('05) 34개소

③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개선으로 안정적 농촌정주와 농업생산성 제고

- 출산농가에 대한 농가도우미제도 도입은 젊은 여성농업인의 재생산 노동을 국가가 처음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정책으로 평가

* 농가도우미 지원 : ('01) 1,692명 → ('05) 3,509명

- 모자농업인 자녀부터 시작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열악한 농업인에 대한 우대조치로 평가

④

체계적인 여성농업인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 국가차원의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 (2001년 12월)을 통한 정책수행의 근간을 마련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여성농업인의 현안문제를 정책화

과 제

①

기본계획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목표와 추진체계 간 논리적 체계를 강화하여 목표에 적합한 과제설정 필요

-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보다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제시
 - 1차 계획 비전은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 발전’으로 여성농업인정책과는 일정한 괴리를 보임
- 정책목표, 정책과제로 이어지는 체계 내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절한 평가와 환류를 실행

②

여성농업인을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공식화하고 농업인의 내부 분화에 따른 차별적 정책 필요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제시
- 여성농업인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별 대상을 명확히하고 이에 따른 대상별 정책 수행

③

여성농업인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생산자로서의 여성농업인 복지 강화

- 재생산노동 담당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여성농업인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정립
- 농업인 가족복지와 차별화된 여성농업인의 복지와 직접 관련된 다양한 정책개발

④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여성농업인 단체의 참여도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체계 구축
- 여성농업인단체를 ‘정책파트너’로서 참여를 유도하고, 능동적 역할 수행이 가능토록 여건 조성

II. 농업 · 농촌 · 여성농업인의 여건변화

1. 농업 · 농촌 환경변화

정부 농정 환경

◇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으로 인한 농정패러다임 전환의 가속화

- 농업정책의 대상이 농업·농촌·식품으로 확대되어 농업의 범위와 정책의 외연 확대
- 농업정책이 전체농가에 대한 평균적 지원으로부터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으로 변화
 - 경쟁력 있는 농가는 투자지원 집중, 영세고령농가는 구조조정을 보완하는 정책 추진

◇ 국가균형발전으로 인한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

- 지역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함에 따라 이해관계집단과 민간단체(NGO)가 지방 정부의 파트너로서 역할 확대

대내외 시장 환경

◇ 시장개방 진전으로 인한 무한경쟁 심화

- 국내 농가의 전문화와 규모화 촉진
- IT, BT 등의 핵심기술 접목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의 진전

◇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

- 대형유통업체의 성장 확대
- 농산물유통혁신, 품목별 조직화, 품질별 가격차별화의 가속화
- 개별농가단위의 농산물판매는 급속하게 감소될 전망

◇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

- 도시화, 핵가족화, 소득향상, 주부 경제 활동증가,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행동이 변화
 - 구입의 편리성추구, 일괄구매행태
- 소비자기호 및 소비패턴의 다양화, 환경친화, 웰빙등의 삶의 질 추구성향 증대
 - 친환경농산물 선호증대, 브랜드 의존형 구매행태, 고급화 및 안전성 추구

국내 농업 구조

◇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가속

- 농가인구
 - : ('00)4,031천명→('04)3,415→('10)2,503
- 65세이상 노령인구 비중
 - : ('00)21.7%→('04)29.3%→('10)34.0%

◇ 농업생산은 대규모 농가에 집중

- 농가 내 계층간 생산력,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농업인 내부의 양극화 확대

◇ 농가의 경영위험도 증가

- 전업화, 규모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불안정과 자연재해, 농가의 차입 자본비중 증가 등으로 경영위험증가
 - 경영관리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 농촌의 어메니티가 새로운 가치로 등장

- 농촌이 쾌적한 거주와 휴식공간으로서의 인식확산
- 환경을 중시하는 의식이 확산되어 농업의 공익적기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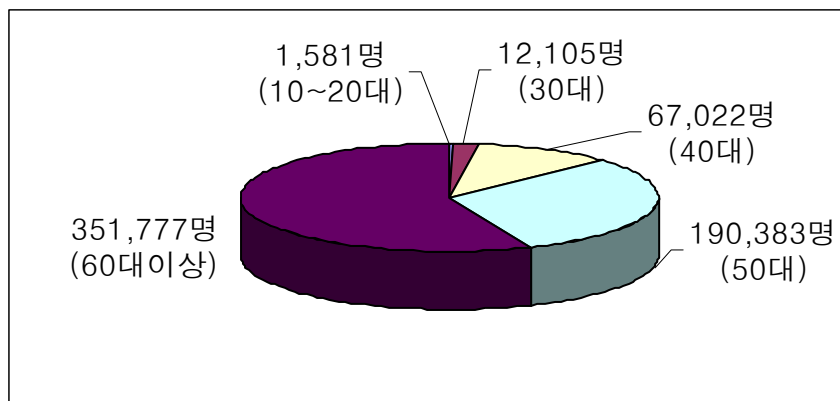
2. 여성농업인의 여건전망

①

농업생산과 경영을 담당하는 전문 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전망

- 젊고 유능한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향후 전업농으로 성장하는 후계농업 인력으로 자리매김
- 대다수 여성농업인은 농가경영체내에서 협업배우자·공동경영주로서 농업생산과 농산물가공·유통 등 각 분야에서 역할이 증대
 - 여성농업인의 기여도가 큰 과수, 원예, 축산, 특작 등 작목에서는 경영규모와 질을 결정하는데 여성농업인의 역량이 관건이 됨
 - 또한 여성농업인이 경영에 관한 정보와 기술 습득을 위해 산지유통 및 생산자조직에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도 필요
- 다만, 농가인구와 농업취업자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철저한 인력관리가 필요

* 2010년 여성농림업취업자 추계 : 50세 미만이 총 80,708명 수준



- 따라서 후계인력 선발에 일정비율 여성을 우선하는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와 여성인력 유인책 필요

②

농업의 외연확대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

- 농업생산 중심에서 농촌관광, 가공·유통 등으로 농업의 외연이 확대됨에 따라 농촌내 다양한 인력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여성의 역할이 증대
- 고품질 농산물 수요증가로 정밀한 여성노동력이 더 많이 요청되며, 농업경영에 있어서도 기획·관리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중요해져서 여성의 특성을 발휘할 기회가 높아지게 됨
- 농촌관광과 농산물 가공 등을 통한 농업부가가치 제고는 여성의 기여가 높은 분야로 여성의 전문능력 강화 필요성 대두

③

여성농업인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가치 보상체계 마련요구 증대

- 여성농업인의 노동참여 증가로 경제적 기여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적절한 보상요구 확산
 - 농업생산수단 및 이익분배 공유, 신용접근성 향상, 연금가입 및 사회적 서비스 확충 등
-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적절한 평가와 보상 요구

④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향상 요구 증대

- 출산 시 모성을 보호하고 농업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육아여건 개선 필요
 -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육시설의 확충 및 육아 부담 경감 추진
- 건강검진의 질적 수준 향상, 농작업 질환이나 사고에 대한 의료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강화도 개선되어야 함
- 여성농업인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노후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필요
-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문화적 환경 개선으로 자신을 위한 문화 향유 욕구 증대

Ⅲ. 2차 기본계획의 추진내용

1. 비전과 목표

< 비 전 >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 농	업 : 여성의 특성과 자질이 발휘되는 여성친화적 산업
◇ 여성농업인	: 남성과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직업인
◇ 농	촌 : 농촌다움이 보전되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 목 표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파트너쉽 정착



< 추진과제 >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 ·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 ·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 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 · 양성평등의식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능력 및 리더쉽 향상 · 후계여성농업인력 육성 기반 확충 · 노동 생산성 향상과 노동 부담의 완화 ·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 · 농촌개발 리더로서 여성농업인의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및 보험수급권 확대 ·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 영농도우미 등 인력 지원 확충 · 여성농업인센터 확충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농촌문화 여건의 개선 · 농촌종합문화복지관 모델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추진 체계의 구축 · 농업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 · 성 인지적 통계의 생산과 활용 ·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개발

2. 추진 방향

①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 농업경영의 파트너로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에 필요한 법·제도개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위한 할당제 지속추진
-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를 통해 공동경영주로서 지위 확대
- 농업정책의 파트너로서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 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들의 정착과 적응 지원을 위한 정책 도입
- 양성평등교육을 여성농업인 위주에서 부부단위, 남성농업인, 공무원, 생산자 조직으로 확대

②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과 리더십 배양
- 전문 여성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여성후계인력 육성기반을 체계화
- 여성참여도가 높은 분야의 농기계 개발을 촉진하고, 생산 활동과 가사의 이중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 마련
-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여성참여율이 높은 부문의 다양한 창업기회를 발굴·지원하고, 창업 연구회의 활동지원을 통해 품질향상 도모
- 농촌지역개발 리더로서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관광을 선도하는 핵심인력으로 양성

③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 각종 사회보험으로부터 소외당하는 불이익을 없애고, 노후 생활의 위험 부담을 완화
-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농어촌 의료시설의 접근성 강화
- 농어촌지역 보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영농활동 전념 여건 조성
- 여성농업인 사회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 문화적 소외의 해소를 통해 삶의 만족도 향상
- 농촌지역의 취약한 건강, 의료, 육아, 청소년, 노인, 문화 등에 관련한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농촌문화 복지관 모델개발 및 보급 추진

④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전달체계의 확립과 지방의 정책수행 역량 강화
-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확대하여 양성평등관점에서 농림사업 추진 유도
- 정책입안, 결정, 평가단계에서 성별통계 및 자료 활용 인식 확산
-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성 인지적 농업정책 개발

4. 세부계획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①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인정

현황 및 문제점

- 여성농업인은 농업 인력의 50.7%를 구성하고 있으나, 무보수 가족 종사자로 간주되고 있어 실질적 경영주로서의 지위는 불명확
 - 농지소유 비율이 낮음에 따라 정책대상자 선정이나 정책자금 대출 등이 제한되고, 농업종사 경력을 인정받기도 어려움
 - 경영이양 직불대상자 선정 및 자금 대출시 농지소유를 근거로 시행
 - * 본인명의의 농지소유 여성농업인은 20%이하수준으로 추정('03 실태조사)
 - 현행 농업인의 정의 규정은 농업종사 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이 취약
 - 직업인으로서 사회 안전망의 독자적인 가입대상이 되지 못하여 사회 보장 서비스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이 매우 취약
 - 농업종사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워 연금가입에 따른 정부지원 혜택이 제한됨에 따라 대부분 경영주로 인정되는 남편 명의로 가입
 - 노동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및 재해에 따른 피해보상도 일용 노동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열악한 실정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대체 영농인력 사용시 농촌주부로 간주하여 보상
- 농가의 주요 자산은 가구주인 남성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화(남성 위주의 재산권 행사가 일반화)
 - 여성농업인의 자산 미보유, 대외적 신용확보의 어려움 등은 직업인 으로서의 경제적 행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대부분 여성농업인의 경우 전문지식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민사·가사 관련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미흡

추진 방향

- 농업경영의 파트너로서 여성농업인의 기여도에 적합한 직업적 지위 인정에 필요한 여건 조성
 - 공동경영인으로서의 지위 확보(농지소유, 자산형성, 정책대상자, 사회보장서비스의 독자적 대상 등)
 - 여성농업인의 자아존중감 및 농업경영의 만족도 향상 유도(노동가치의 인정이나 공동재산 소유 등)
- 가족 구성원이 농업경영에 있어 공동 경영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농업경영체로 육성
 -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가족간 합의에 의한 농업경영 공동 참여 확산
- 민사·가사 관련 피해구제 및 최소화를 위한 지원 장치 마련

추진 계획

- 공동농업경영자로서의 지위와 사회적 지위인정 방안 마련
 - 농업인의 종사 지위를 분류·정립하기 위한 연구수행
 - 적합한 법체계 적용 방안 및 관련 규정 마련, 실제 농업종사 사실 확인규정 보완 등 법제화 추진
 - 가족원의 공동합의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한 ‘가족경영협정’ 보급 지원
 -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가족원간에 영농계획 수립, 노동에 대한 보수, 휴가, 경영승계 등 협약을 체결하여 가족구성원의 농업경영 참여에 대한 성취감 고취와 경영합리화 유도
 - 여성농업인단체 주관으로 창업농 및 우수 후계농을 대상으로 각 도별 10농가내외 선정 시범 도입, 이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대상 농가를 확대
 -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에 대해서는 연금가입, 창업농 및 부부 후계농 선발,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우대 방안 검토
- * 일본은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가족경영협정’을 추진중이며 가입 농가가 점차 증가
· ('99) 2,294농가(0.5%) → ('01) 17,200(4.0%) → ('03) 25,151(5.8%)

- 농업인 부부가 결혼 후 취득한 농지에 대한 부부공동소유제 인정 활동 전개
 - 여성농업인단체 주관으로 여성계에서 추진 중인 부부재산제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
 - 여성농업인 명의의 농산물출하 및 관리통장 갖기 확산
 -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생산자조직의 참여 유도
 - 여성농업인의 법률 소송시 법률상담지원과 피해구제 활성화
 -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매월 실시하는 정기 법률상담 운영 내실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분기별로 실시하는 이동상담실 확대 운영
- * 중장기적으로 지역농협에 여성농업인 전담 상담창구 설치 추진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지위인정 방안 마련							
○ '가족경영협정' 시범 추진							
- 대상지역, 농가선정							
- 시범사업 및 성과분석							
○ 부부재산제 개정 논의 참여							
○ 농산물출하 명의 및 관리통장 갖기 확산							
○ 법률상담지원 활성화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여성정책과·구조정책과, 농진청 농촌자원과·농촌자원개발 연구소, 농협중앙회, 여성농업인단체

<참고 1>

EU국가의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 프랑스는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여성자영업자가 경영주(단독 및 공동 경영주), 경영주의 협력자, 임금수령자의 3가지 지위중 하나를 택하도록 함
 - 1980년 농업법에서 농지소유와 무관하게 한쪽의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나 서명 없이도 농장의 경영에 관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용인
 - 여성농업인을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경영인으로 간주하는 실질적 공동경영주 제도를 채택
 - 1999년 농업법에서는 연금수혜 등에서 경영자와 동등한 사회적 신분을 보장
 - 농지 임차계약의 종결·갱신에 대해 배우자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규정
 - 공동경영인이 아닌 경우 ‘경영에 협력하는 사람’으로서의 ‘준경영인’ 지위 인정. 이때 부인이 자산관리행위를 남편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
- 독일,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여성농업인에게 공동 경영주의 지위를 부여

국 가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인으로 인정하는 조건
독 일	○ 부부명의로 농장을 토지등기부에 등록
벨기에	○ 소유계약서 등의 각종 서류를 양 배우자 명의로 작성하거나 양 배우자 명의로 차지계약을 체결하고 부부가 모두 농업에 취업할 경우 - 공동경영하는 각 배우자는 수입과 지출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각 배우자가 본인 수입으로 전용농기계 및 도구 구입·관리 가능 - 공동구입자재는 공동소유
덴마크	○ 부동산 권리증서에 부부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공동소유자로서 의사결정을 공유하고 재산, 수입, 부채를 균등 배분
영 국	○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 경영주 사망시 여성의 주된 수입을 농장 혹은 농장 일부에서 얻을 경우 임차권을 계승할 권리를 가짐

- 세제상 혜택이나 재산공유제도의 형태로 사회적 신분 인정
 - 벨기에 : 농장수익의 50%를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양도한 소득에 대해 과세
 - 네덜란드 : 재산계약을 맺은 부부에 대한 재산과 재산에서 발생 하는 가치의 1/2에 대한 권리 인정

일본의 가족경영협정과 우리나라 시범사업 실시 현황

① 일본의 가족경영협정

□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 1960년대 일본 정부는 농업후계자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
 - 경제성장을 계기로 농외취업이 대폭 늘어나면서 농업에서 청년층의 자가 노동에 대한 보수문제 제기
- 1964년 전국농업회의소가 ‘가족협정농업의 보급 추진요령’ 제정으로 본격화되어 가족구성원의 ‘파트너쉽 경영’ 확립으로 발전
- 1967년에는 후계자 확보 문제외에 여성의 지위향상, 경영세분화 방지, 경영의 근대화·합리화라는 시각을 추가
- 1970년대는 일본인의 정서에 맞지 않고 세금·상속법 등 제도와 부합하지 않아 보급이 미흡
- 1990년대 들어 전국농업회의소는 ‘가족경영협정’으로 바꾸어 보급 추진
- 1995년 일본 정부는 ‘농업자연금법’을 개정하여 여성이 ‘경영자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도록 권고하는 등 제도 보급의 새로운 전기 마련
 - 세대당 1명으로 제한하던 연금가입자를 농업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여성은 농지에 명의를 없거나 30a미만인 경우도 연금가입이 가능토록 하고
 - 연금가입을 위해 부부간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토록 하여 정부가 여성을 ‘공동경영자’로 인정하고 여성농업인의 노후를 보장

□ 개요

- 농가 경영주와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원간에 농업경영에 따른 역할과 의무, 보수 등을 문서로 명확히 협약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농업 경영 참여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고취

- 일본 가족협정 체결 농가 수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가입농가 수 (전업농대비 비율)	2,294농가 (0.5)	14,777 (3.5)	17,200 (4.0)	21,575 (4.9)	25,151 (5.8)
전업농가 수	433,000	426,000	433,000	439,000	443,000

※ 자료 : ('99)농림수산성 부인·생활과 조사 ('00이후) 농림수산성 보급과 조사

※ 가족경영협약은 농업생산과 가사 노동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하면서도 가족경영과 관련해서 의사결정권이나 재산권을 갖지 못하는 농촌여성의 문제 및 가족경영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 가족협정의 내용

- 농업경영 참여자의 역할과 임무, 책임에 관한 사항
- 경영참여자의 월급, 보너스, 보험료 지급,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자산처분, 아들(며느리)의 독립된 경영에 관한 사항

□ 체결방법

- 경영인간 대화를 통한 합의 → 문서화 후 당사자 서명날인 → 참관인 날인(지방자치단체와 농업관련단체의 장 혹은 농업인 조직 대표)

② 우리나라 가족경영협약 시범실시

□ 시범실시 개요

- 2004년 8월에 충남 대전지역의 25쌍의 젊은 농업경영인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경영협약 체결을 위한 농업인 부부 워크숍’에서 가족경영협약 체결(25쌍 중 22쌍이 협약 체결)
- 3개월 후와 1년 후의 효과점검을 위한 심층면접조사 실시

□ 가족경영협약 주요 항목

- 농가의 경영참여에 있어서의 여성의 책임과 권한
- 여성농업인의 노동에 대한 기여분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이익의 분배
- 근로조건은 노동시간 및 휴일에 대한 항목, 장래의 경영이양 등

□ 시범실시 결과

구 분	‘04년(5점 만점)		‘05년	
	부인	남편	부인	남편
여성농업인의 농업자부심 등 증가	4.23	3.94	4.24	4.19
가족의 친밀성 증대	4.16	4.11	4.23	4.30
노동의 합리적조정 및 생산성 향상	3.57	3.44	3.65	3.58

< 긍정적인 면 >

- 제도 도입이 농가의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의 개선 유도
- 여성의 과중한 노동을 줄이는 계기와 노동에 대한 보상이 가능
- 여성의 자존감과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는 등 변화

< 한계점 >

- 가부장적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가족 경영협약을 추진하는 것의 효과는 불확실
- ⇒ 젊은 고학력의 창업농 및 우수 후계농을 목표 집단으로 정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가족경영협약을 서서히 확산 필요

② 여성농업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현황 및 문제점

- 농업관련 정부위원회 여성위촉 비율이 증가 추세이나 국가 전체 목표 ('04년 34%)에는 미달하는 수준임
 - 농림부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 : ('01) 30.2% → ('04) 32.4
 - ※ 여성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에서는 '07년까지 40% 위촉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관련 위원회의 여성위촉비율은 30%를 밑도는 수준으로 여성의 농업정책 결정과정 참여 수준은 저조
- '04년부터 10년간 1천개 권역을 개발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 지역주민과 지역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을개발협의회를 운영하여 상향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여성의 의견 반영 필요

추진 방향

- 정책결정 단계별 위원회에 여성위원 목표제를 확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농업인의 의견 적극 반영
 - 정부위원회 여성위촉 비율을 '07년이후 40%이상으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관련위원회 여성위촉 비율은 '10년까지 40%이상으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여성농업인 참여 활성화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에 여성 참여 확대 추진

추진 계획

- 농림부소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비율 확대
 - ('06)38% → ('07이후)40%이상으로 확대
 - ※ '08년부터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국가 전체 목표와 연계
 - 신설위원회 및 임기도래 위원 위촉시 여성위촉비율 준수 유도

-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관련위원회의 여성위촉 비율 확대
 - ('06)32%→('07)34%→('08)36%→('09)38%→('10)40%
 - ※ 여성위원 중 여성농업인을 50%이상 위촉
 - 각 시·도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설치
- 지역의 여성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시·도 여성농업인육성 계획의 운영상황을 모니터하는 시·도 여성농업인협의회 운영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에 여성 참여 확대
 - 마을개발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는 남녀공동대표제 도입 장려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위원회 여성위촉 비율	36%						
- 농림부		38%	40%	40%이상			
- 지방자치단체		32%	34%	36%	38%	40%	
○ 마을개발협의회 여성참여 확대							
○ 시·도 여성농업인협의회 운영(단체)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여성정책과, 위원회 운영 관련부서, 농촌진흥과,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업인단체

③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

현황 및 문제점

① 협동조합 참여

-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현황(2005년말)
 - 조합원 : 전체 조합원 2,018천명중 510천명(25.3%)
 - 대의원 : 전체 대의원 71.5천명중 8,341명(11.7%)
 - 임 원 : 전체 임원 13천명중 304명(2.3%)
 -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개정(농림부고시, '05.6.14)으로 여성대의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조합에 의무적으로 여성대의원을 두도록 하고, 여성조합원들이 별도로 여성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의 여성분과위원회는 30%수준 설치(337개 조합)
 -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저조로 남성중심의 협동조합 운영관행 잔존
 - 여성의 낮은 참여율과 의사결정 과정의 낮은 대표율은 농협내 여성사업의 위축을 초래
- ※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은 3.9%에 불과

② 작목반 참여

- 전국의 작목반수는 '04년말 기준 16,950개로 377천여명의 농업인이 참여
 - 농협에서는 작목반 육성 및 활성화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06년부터 산지유통조직에 지원되는 자금을 통합하여 운영
 - 작목반 등 하위조직은 공동계산, 농가조직화 등을 통해 상위조직 진입체계 마련(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 지침)
 - 농협중앙회는 산지 일반조직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로 추천하고, 자금한도액을 배정받아 신청 조직에 지원
- * 지원대상 조직 선정시 유통활성화사업 성과, 유통활성화 기반구축 등을 평가

- 작목반의 경우 대부분 남성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습득에서 여성농업인이 소외되고 있음
 - 작목반 참여여성 4.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참여여성 3.1%

추진 방향

-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도모
 -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를 농협의 여성사업 중점 과제로 선정
- 작목반 운영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넓혀 전문 농업경영·품목기술 정보 습득기회 제공
 - 여성농업인의 작목반 참여 비율에 따라 각종 정책지원을 차별화하고, 여성조합원 품목별 전문교육도 내실화

추진 계획

① 협동조합 참여

-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조합원·대의원에 각각 30%이상 참여를 추진 하고, 여성임원 선임도 연차적으로 확대
 - 여성조합원 : '07년까지 30% 참여 추진
 - 여성대의원 : '10년까지 30% 참여 추진
 - 여성임원 : '10년까지 700명 수준 선임
- 협동조합의 여성분과위원회를 '10년까지 전 조합에 설치
- 조합원 관련 행사 및 교육시 남녀평등의식 확산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조합원의 농협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도 강화
- 여성대의원·여성임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작목반 참여

- 여성농업인 참여율이 높은 작목반을 지원대상 조직으로 선정 우대
 - 지원대상조직 선정 평가항목에 여성농업인 비율(30%이상)에 따른 가점사항 추가 등 개선 추진
 - * '06년 제도보완을 거쳐 '07년부터 시행
- 작목반 운영에 품목별 여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여성조합원 가입	23.8%	27	30%이상				
○ 여성대의원 선임	7.5천명	8.5	10	12	13	30%이상	
○ 여성임원 선임	290명	350	450	500	600	700	
○ 조합내 여성분과위원회 설치	337개						
○ 작목반 지원제도 정비							
○ 여성작목반원 전문교육강화 및 지원 우대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유통정책과, 농협중앙회

4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여성농업인단체 회원 교육 지원
 - 농림부는 여성농업인단체를 통해 회원 교육 지원
 - 농촌진흥청은 생활개선회 회원 교육 지원
 - 농협중앙회는 농가주부모임 임원 교육 지원
 - 교육내용 : 농업·농촌 발전과 여성의 역할, 농업정책의 이해, 리더쉽 훈련 등
-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농업경영에 대한 성취동기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 여성농업인 상(像) 부각을 위한 세미나, 정책 참여를 위한 토론회, 우수 여성농업인 포상 등
 - 농업 및 농촌사회 유지·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여성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여성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하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99년부터 농·소·정 협력사업 추진
 - 도시민에게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증진
 - 농업인에게는 소비자 지향적 영농 유도로 적극적 참여농정 실현
 - 매년 여성농업인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

추진 방향

- 중앙과 지방의 농정 파트너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 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회원교육 유도
 - 우수여성농업인 발굴 포상으로 자긍심 고취
- 여성농업인단체가 주체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선도조직으로서 의식개혁 주도
- 도시민의 주 5일제 근무 등 여가수요를 농촌체험으로 연결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 제고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단체 회원교육('06~'10) 지원
 - 교육인원('06~'10) : 33천여명(농림부 15천여명, 농진청 16천여명, 농협중앙회 2천여명)
 - 수준별,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 운영
 - 교육내용 : 경영능력 향상, 협동조합 교육, 농업정책의 이해 등
 - * 단체별 교육계획 수립시 지역단위 교육과정을 확대
 - * 교육프로그램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고 교육사업 평가를 통해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계속 지원
- 여성농업인단체 연구활동·정책제안 지원
 - 여성농업인정책 세미나, 정책토론회 개최 등
- 우수여성농업인 발굴 포상 : 매년 정부포상, 장관표창 등
 - 농업인의 날 포상, 품목별 포상 등에 반영
- 여성농업인 및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교류사업 지원
 - 농업·농촌체험 사업, 농업·농촌 바로 알리기 사업, 농업·농촌 함께 지키기 사업, 미래 소비자 농업교육 등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회원교육지원	매년						
- 농림부	3천여명	3.0	3.0	3.0	3.0	3.0	
- 농진청	3천여명	3.2	3.2	3.2	3.2	3.2	
- 농협	200여명	400	400	400	400	400	
○ 연구활동 지원 등							
- 세미나, 토론회							
○ 우수 여성농업인 포상 지원우대							
○ 농·소·정 협력사업							
○ 미래 소비자 농업교육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여성정책과·경영인력과, 농진청 농촌자원과, 농진청 농촌자원개발 연구소, 농협중앙회, 지자체

5] 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농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농업·농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05년도에 농어업에 종사하는 남자의 혼인 건수는 8,027건이며, 그 중 외국인 여성과 혼인은 2,885건으로 35.9% 차지('06.3, 통계청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 * '95~'04기간중 읍면지역 거주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9,620건에 달함
- 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은 언어·문화의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 갈등도 발생
- 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의 정착과 적응을 지원해 줄 사회적 차원의 서비스제공은 미흡

추진 방향

- 국제결혼 이주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에의 안정적인 통합과 원만한 유대관계 형성 지원
 - 국제결혼 농업인 부부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농촌생활 정착지원과 평등하고 안정적인 가족문화 조성
 - 이주 여성 가족의 갈등과 고충을 지속적으로 상담해 주는 지역서비스체계 구축
 - '06년에 이주 여성농업인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07년부터 시행

추진 계획

- 지역농협문화복지센터에서 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들의 정보교환, 유대관계 형성 및 한국문화 교육 추진
 - 안정적인 농촌정착 프로그램 개발 시행, 가족과 이웃간 교류 지원
 - 한국문화 적응, 한글교육(자녀포함), 사회적 소외감 해소, 가정폭력 극복 등

- 여성(농업인)단체와 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간의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이주 여성농업인 적응 지원
-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이주 여성농업인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 농림부의 이주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계획 수립('06년)
 - 국제결혼 부부(취학전 자녀 동반)에 대해 연 2회 교육 실시
 - 이주 여성농업인 고충상담을 위한 상담활동가 양성
 - 시·군 여성관련 상담소 및 성·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원, 상담활동을 희망하는 여성단체 활동가 대상
 - 이주 여성농업인 화합의 행사
 - 이주 여성농업인과 결연 맺기, 정보 제공처 홍보, 가족참여 마당 등
 - 모범 국제결혼 농업인 부부 표창 등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지역농협문화복지센터 교육지원							
○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 부부교육, 화합의 행사							
○ 상담원 양성(도별)			40명	40명	40명	40명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여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여성(농업인)단체

6 양성평등의식의 확산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은 도시에 비해 보수적이며 성차별적 문화가 남아있음
 - 이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젊고 진취적인 여성농업인의 농촌사회 정착을 저해
- 남녀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3%(농림부 실태조사. 2003)
 - 남성농업인의 의식변화를 위한 양성평등교육이 절실히 요구됨
- 농업인력육성정책 및 사업 담당자들의 양성평등교육 경험은 매우 저조
 - 양성평등교육에 여성공무원은 36.4%가 참여한 반면, 남성공무원은 8.7%에 불과(여성부. 2004)
- 전국의 농촌 자연부락 36천여개 마을의 이장도 대부분 남성인 실정
 - 마을 이장은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여성농업인에게 마을살림 주관 기회 제공 필요
 - * 전남도는 여성이장 마을에 대한 지원우대를 통해 주민 만족도가 높아가고 있음

추진 방향

- 양성평등교육을 여성농업인 위주에서 부부단위, 남성농업인, 공무원, 생산자조직들로 확대
- 여성농업인단체 스스로 캠페인 등 다양한 양성평등의식 제고 활동 필요
- 농촌마을 여성이장 확대

추진 계획

- 교육대상별로 교육주관 기관 및 단체가 양성평등의식 교육 운영
 - 여성농업인 : 직업인으로서 정체성 강화, 민주적인 가족문화 만들기 (여성농업인단체 주관)

- 남성농업인, 부부단위 : 성 역할 고정관념 타파, 부부공동 경영의 책임과 역할 공유(농업인단체, 생산자조직, 품목별 상설교육,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 운영기관에서 주관)
- 농림공무원 : 양성평등교육, 성 인지 정책, 성별영향평가 등을 전문 교육과정에 포함(중앙 및 지방의 공무원 교육기관)
 - * 교육주관 기관·단체별 양성평등교육 수행 여부를 감안하여 차기 농업인교육훈련비 책정시 가감하여 반영
- 여성농업인단체 주관으로 다양한 양성평등 캠페인 전개
 - 부부공동 문패달기, 부부공동 명함받기, 부부공동 농장명 붙이기, 농산물 포장지에 부부공동 명의 기재, 여성명의의 출하통장 갖기, 부부재산계약제 확산 등
- 농촌마을의 여성 이장을 30%이상 확대
 - 자치단체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06년)
 - 여성 이장 마을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는 지원방안 강구

추진 일정

주요 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기관·단체별 양성평등교육 확대 운영							
○ 여성이장마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여성 이장 마을 우대 지원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여성정책과·경영인력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 훈련기관, 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나.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①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및 리더쉽 향상

현황 및 문제점

① 농업경영능력 배양

- '98년부터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농업계대학 등 1,100여개 농업관련 기관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
 - '04년 여성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은 전체 교육인원의 30%수준
 - 기초·중급교육, 방문 및 이동교육 등은 43%로 참여율이 높은 수준이나,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은 여성농업인 참여가 현저히 낮음
- 특작·원예부문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를 감안, 농진청주관으로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
-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가 실제 정책 또는 자금 지원과 연계되지 못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이 남성에 비해 저조
 - 정부주도의 품목교육은 현장 농업인의 요구나 기대와 괴리도 초래
- 여성농업인 해외연수는 후계 여성농업인, 여성전업농 등을 대상으로 매년 농업선진국 현장체험 연수 실시
 - 남녀 공동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참여 기회가 적고, 여성농업인만의 특화된 연수프로그램은 없음

② 리더쉽 향상

- 농업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전문 강사로 육성하기 위해 '02년부터 여성농업인 교관반을 개설 운영
- 중앙 및 지방의 농정관련위원회에 여성농업인 위촉이 확대되고 있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전문성은 아직 미흡
 - 특히 지방 농정관련위원회의 경우 실질적 회의 참여 역량 배양 필요

추진 방향

① 농업경영능력 배양

- 여성농업인에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참여 확대로 농업경영 능력 배양
 - 여성농업인의 교육기회와 교육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운영 강화
 - 지역단위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지속적 농업경영 능력 향상 지원
- 다양하게 분화된 여성농업인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품목별, 분야별, 연령별 등 대상집단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 교육운영주체의 민간 전환 및 품목별 전문교육 도입과 연계하여 추진
- 선도 여성농업인들이 선진 농업국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을 체험하여 국제적 안목증진과 국내 농업의 활로 모색

② 리더쉽 향상

-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
- 농정관련 위원회에 여성의 이해와 관점을 적극 반영키 위한 대표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추진계획

① 농업경영능력 배양

- 품목단체별로 시행하는 품목별 전문교육에 여성농업인 20%이상 참여 추진
 -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정도를 품목단체 교육훈련비 배정 시 가감하여 반영
- 정보화교육은 교육과정을 활용 목적에 따라 개편하고, 교육내용을 전문화·차별화하여 수요자 수준에 맞게 선택·활용토록 추진
 - 매년 50천명이상 농업인 정보화교육중 여성농업인 50%이상 참여
 - 기초·중급 교육은 축소, 중기과정과 농업경영정보 과정 확대
 - 교육인원('06~'10) : 128천명('06년 28천명, '07년이후 매년 25천명)

-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 운영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소규모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 '06년 8개소 → 2020년까지 총 169개소 운영 목표
 - 농업경영인 육성, 수확후 처리 및 가공, 정보화, 관광서비스, 사회 복지, 회계, 마케팅, 조직관리, 리더쉽 등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
- 지역 농과계 대학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 전체 위탁교육인원의 20%수준에서 여성농업인에게 우선순위 부여
 -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
- 농업경영컨설팅에 여성농업인 20%이상 참여 추진
- 여성농업인 해외연수는 선도 여성농업인으로 체험단을 구성하고, 품목 또는 분야별로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연수과정 운영
 - 여성농업인단체별 20여명의 체험단을 구성 운영하되 매년 농업인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시행
 - 연수비용중 일정액은 자부담으로 충당(50%)
 - 연수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보하고, 연수결과는 국내 여성농업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강구

② 리더쉽 향상

- 여성농업인 전문강사요원 양성
 - 매년 25명 이상 선정, 2박3일씩 6회에 걸쳐 농업연수원에서 합숙교육
 - 교육내용은 기획력개발, 차세대 리더능력 개발, 교안작성 실습 및 교수법 훈련
 - 전문강사요원 교육이수자를 중심으로 DB구축 및 지역 강사로 활용토록 여건 조성

○ 여성 농정위원 전문성 강화

- '06년까지 매년 40명씩 선정, 농업연수원에서 1박2일 합숙교육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 여성위원을 교육대상자로 추천
- '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을 주관토록 하여 매년 200명 수준으로 확대
 - 관내 여성 농정위원을 대상으로 20~30명 과정을 지방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운영토록 자체 교육계획 수립 시행
- 교육내용 : 농정시책, 의사결정 과정 참여 방안 및 사례, 행정조직 및 예산·사업 등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정보화 교육	매년 23천명	28	25	25	25	25	
○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개소)		8	18	28	38	48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및 컨설팅 참여 확대		20%	20%	20%	20%	20%	
○ 품목별 전문교육 참여 확대		20%	20%	20%	20%	20%	
○ 여성농업인 전문강사 요원 양성	23명	25	25	25	25	25	
○ 여성농정위원 교육	40명	40	200	200	200	200	
○ 선도 여성농업인 해외 선진농업연수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여성정책과·정보화팀·경영인력과, 농업연수원,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업인단체

② 후계 여성농업인력 육성기반 확충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01~'05) 선정된 여성후계농업인은 1,370명으로 같은 기간에 선정된 전체 후계농업인 9,855명의 13.9% 수준
 - '04년부터 신규 창업농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35세미만 창업 후계 여성농업인 선정시 가산점(20점) 부여
-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05.1)을 마련하고, 20만호 정예인력육성 방안을 구체화
 - 젊고 유능한 인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유인대책으로 향후 10년간 정예 여성농업인력도 정예농업인력의 20% 육성 목표
 - 기존농도 교육·경영혁신 지원으로 정예인력화 추진
- 전문 농업경영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한국농업전문학교 설립·운영중
 - 여학생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우선 선발
 - 졸업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영농정착 자금이 지원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추천

추진 방향

- 여성농업인을 농업구조의 선진화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요 인력으로 육성
 - 2차 계획 기간 중 정예농업인력의 20%를 여성농업인으로 선발
 - 여성농업인력의 신규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한국농업전문학교내에 여성 창업농 양성에 필요한 과정 보강
 - 여학생의 능력 발휘가 용이한 교과목 개설 및 학과 신설

추진 계획

- 저연령·고학력 집단의 여성농업인을 집중 육성
 - 고학력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여성 후견인을 우선 배정
 - 후계농 지원사업, 농업인턴제, 창업농후견인제, 대학생 창업연수제에 20%까지 여성 우대
 - 35세 미만 창업농은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2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력 유입·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45세미만 기존 농업인은 후계농으로 선발하여 종합자금으로 지원
- 쌀 전업농 선정시 일정 요건(2ha이상, 55세이하)을 갖춘 여성농업인 우선 선발
- 여성이 농과대 졸업, 인턴제도 이수, 생산수단의 부부공동소유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부부창업농, 부부후계농으로 우선선발 및 우대지원 제도 마련
-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농촌관광, 농산물가공·유통, 농촌복지 등 학과 신설
 - '06년 관련 제도 개선, '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명)						
○ 여성창업농	200	200	240	300	220	240	
○ 창업농후견인제	20	20	40	60	80	100	
○ 농업인턴제	20	20	40	60	80	100	
○ 대학생창업연수	20	40	40				
○ 한농전 제도개선							
○ 농산업계열 학과 신설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경영인력과·농산경영과, 한국농업전문학교

③ 여성농업인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의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영농형태가 벼농사 위주에서 원예·화훼 등 밭작물로 변화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도 증가
 - 벼농사의 영농비중은 '90년 69.7%에서 '04년 51.5%로 감소
 - 여성농업인의 노동투하량이 많은 과수, 채소, 화훼부문은 '90년 16.1%에서 '04년 33.0%로 증가
- 현재 보급되고 있는 농업기계는 대부분 남성의 체형에 맞춰 개발되어 여성이 운전 조작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여성의 81%가 트랙터의 클러치페달 조작을 힘들어 함
 - 여성이 많이 활용하는 밭작물용 농기계와 선별기 등 수확 후 작업 기계 등은 여성이 다루기 쉬운 소형·경량화 필요
- 그러나 여성이 이용하기 쉬운 소형 농기계는 수요가 적어 업체에서 생산 기피
 - 개발된 농기계 생산 및 보급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현장 보급·정착이 어려움
- 더욱이 여성농업인의 노동투하량은 농번기 13.4시간, 농한기 9.7시간으로 전체 여성들의 평균 7.5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추진 방향

- 여성농업인들에게 적합한 작고 가벼운 농기계 개발로 여성의 노동부담 경감
 - 여성 참여도가 높은 농작업의 기계화·자동화 추진
 - 개발된 농기계의 현장적응시험과 여성농업인이 참여한 현장평가회 개최, 여성농업인들에 농기계 정보 전달 체계 구축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높은 농작업에 대한 기계장치 개발을 강화하고, 취급조작이 용이하고 안전한 농기계 개발
 - 소형화·경량화, 자동화·로봇화로 편의성 증대 및 노동부담 경감
 - '10년까지 총 63기종의 농기계 개발연구 진행, 개발시 공모방식 도입
- 2001년이후 개발된 여성용 농기계 보급현황 및 문제점 등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 및 보급주체별 개선방안 마련
- 농기계 개발 현장적응시험, 현장평가회에 여성농업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정보전달 및 홍보체계 구축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여성농작업 농기계 개발	12	12	11	13	13	14	
○ 여성용농기계 보급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업무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 농협중앙회

4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90년부터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들의 경제력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03년까지 12개품목(된장, 한과, 과일즙, 천연염색 등) 567개소 추진
- '03년부터 38개소에 대한 시설 및 브랜드개발, 포장디자인 개선을 지원하였으나 상품디자인 개발 및 홍보는 취약
- 여성농업인의 창업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일감 발굴은 취약
 - 농진청의 경우 창업자 연구회가 2종류(한과, 장류) 96명에 불과
-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소득사업 관련 정책 지원 필요

추진 방향

- 농촌여성 보유기술을 활용하고,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일감 발굴 및 창업지원
 -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산자원을 새로운 가공소재로 개발하여 소득사업으로 연결
 - 여성 특유의 솜씨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지원
 - 품질향상과 정보교류를 위한 품목별 연구회 조직과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의 보유기술을 활용하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 기술보유자를 중심으로 작업장 및 시설설치, 생산원료 확보, 포장지 디자인 등 지원
 - 경쟁력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품목부터 우선 육성하고 연차적으로 다양화하여 '10년까지 53개소에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 품질향상 지원 사업장 확대 : ('04) 15개 → ('06~'10)79개소
 - 여성농업인 창업자들의 품목별 연구조직 확대 : ('04) 2개회→('10) 5개회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여성농업인 창업지원(개소)		9	10	10	12	12	
○ 제품 품질향상 사업(개소)	15	15	16	16	16	16	

업무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5] 농촌개발 리더로서 여성농업인의 전문화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관광분야는 여성의 참여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려우며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가 중요한 영역임
-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에 따라 지역개발 관련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중장기적으로 확대 예정
- 농촌의 환경과 자연을 관광 자원화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리더 인력 양성 필요

추진 방향

- 농촌지역개발 리더로서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 농촌관광 자원을 활용할 현장의 핵심인력 양성

추진 계획

- 농촌지역개발 리더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 등 여성인력을 우대
 - '08년까지 20%, '10년까지 30% 범위 내에서 여성농업인 등 여성인력 참가 희망자 우선 선발 및 추천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지역개발 여성리더 교육	-			20%		30%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여성정책과 · 농촌진흥과 · 경영인력과, 농업연수원

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1 여성농업인의 연금 및 보험수급권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대다수 여성농업인들은 국민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어 기초적인 생활 보장이 취약한 상태
 - 부부 모두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과 본인연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어 연금가입을 기피
 - 여성농업인 자신 명의 또는 남편과 함께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 11.2%, 개인연금은 7.3%에 불과하여 노후대책이 거의 없는 상태
- 산재보험을 5인미만 농업사업장까지 확대하였으나 법인이 아닌 농업인 등은 가입 제한

추진 방향

- 직업인으로서의 지위인정에 상응하는 사회보험 서비스의 확대
 - 4대보험 관련 정책을 여성농업인의 입장에서 모니터링
- 노후에 대한 서비스 확대로 기초생활 보장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수급권 확대방안 강구
 - 여성농업인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연구와 기초자료 수집
 - 여성농업인의 가입·혜택이 가능한 보험상품개발 및 보상관련 규정 보완 방안 마련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기초연구 및 자료수집							
○ 관련상품 개발 및 규정보완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사회과, 연구기관

2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2년에 한번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낮은 수준
 -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여성농업인은 절반 수준(50.2%)
 - 유방암, 자궁암, 위암 등 암검진은 52.9%만이 수검
- * 농림부, '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농어촌지역 여성의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건강관리 및 질환대책 필요
 - 농부증, 퇴행성 관절염, 노인성 신경통 등 농촌지역 여성의 만성질환 증가
- 농어촌지역은 병원까지 접근성이 떨어져 검사비용외에도 교통비 등 별도 부담비용 발생

추진 방향

- 농어촌지역 의료시설의 접근성 강화와 지원시스템 및 인력보강
- 농어촌지역 만성질환 치료 시설의 확충 등 농어촌형 의료의 전문화

추진 계획

- 농어촌주민에 대한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조기검진 우선 확대
 - ('05년) 395천명 → ('09) 720천명
 - * 지원대상 :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농어촌지역에 대한 고품질의 한방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한방의료 확대
 - 178개 보건소(농어촌 144개소, 도농복합지역 34개소)에서 실시
 - 양질의 전문화된 한방 공공의료서비스 및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 655개 보건(지)소에 격년제 지원

-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들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피로회복 시설이 없는 마을 위주로 건강관리실 확대 설치
 - 신규 설치 : ('05)108개소 → ('06) 158 → ('07) 158(전국 1,308개소 운영)
 - * 건강관리실 시설 : 피로회복 및 체력단련기구, 찜질방, 건강측정기구 등
- 농어촌 여성질환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어촌여성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농부증 예방 및 건강증진, 식이요법,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농업인전문병원 설치 방안을 중기 추진과제로 검토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5대 암 조기검진사업 실시	395천명	445	540	630	720		복지부
○ 한방지역보건사업 실시(177개소)		177개소	177	177	177	177	복지부
○ 한방건강증진사업기반 구축 * 655개소에 대하여 격년제로 실시	320개소	305	355	320	335		복지부
○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확충	108개소	158	158				농진청
○ 농촌여성 건강실태 조사			1회		1회		복지부
○ 농촌여성 건강프로그램 보급 (개소)				20	40		복지부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사회과·여성정책과,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진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③ 영농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충

현황 및 문제점

- 여성농업인의 출산시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토록 하고 도우미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농업생산성 제고
 - 지원대상 및 기간 : 출산여성농업인, 출산전후 180일중 30일한도
 - 지원단가 : 도우미 이용료(30천원/1일)의 80%, 자부담 20%
 - '00년 시범사업(68개 시·군)에 이어 '03년 전국으로 확대
 - * '05년부터 분권교부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
 - 또한 도우미 지원단가가 낮고, 이용기간이 짧아 사업활성화에 애로
- 그동안 여성농업인단체 등에서는 사고농가 등에 대한 도우미 제도 시행 강력 요구
 - 영농지원 필요사유 : 출산 34.4%, 사고·질병 30.9%, 교육훈련 6.5%, 길·흉사 6.9%
- 농촌지역의 급속한 노령화 진행으로 농촌생활 유지가 어려운 취약 농가도 증가 추세
 - 65세 이상 고령농가인구 비율 : ('94) 16.0% → ('00) 21.7 → ('04) 29.4 / 여성 54.5%
- 여성농업인에게는 육아문제가 농업생산활동의 가장 큰 제약 요인
 - 농업인자녀(0~5세)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43% 수준
 - * 농어촌지역 1,420개 읍·면 중 35%인 491개 읍·면에 보육시설이 없음

추진 방향

- 여성농업인의 산전·산후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한 농가도우미제 개선
 - 도우미 이용료 현실화, 도시근로여성 출산휴가기간 수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 사고 및 질병발생, 교육참가 등으로 농작업에 차질이 있는 농가에 대한 영농지원 인력 제공
- 고령단독, 편조부모 가정 등 취약·고령농가에 대한 가사지원으로 안정적 농촌생활 유지 도모
 - 도시와 농촌의 유희인력을 조직화하여 취약·고령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
-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을 덜어 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추진 계획

- 출산농가도우미제도를 농업인들의 실질적 요구에 부합되게 확대
 - 농촌여성 평균임금 수준을 감안하여 도우미 이용료 현실화
 - ('05) 30천원/1일 → ('06이후) 35천원 이상으로 단계적 인상
 - 도시근로 여성 출산휴가기간(90일)과 동일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연장
 - ('05) 30일 → ('06) 60일 → ('07) 75일 → ('08) 90일
 - * 지방자치단체별로 채용 확보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 도시·농촌의 유희인력(은퇴자, 자원봉사자, 주부 등) 등을 파악 DB 화하고, 사고발생농가 및 고령취약농가와 상호 연계하여 인력지원
 - 65세 미만 농업인(18세 이상, 3ha 미만)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농 인력 지원
 - 65세 이상 고령단독농가 등 취약농가에 대한 가사인력 지원
 -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인력지원단 운영 및 인력 지원
 - '06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연차적으로 취약농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인력지원 대상을 간병·영농교육이수 희망농가로 확대
 - 지원조건 : 국비 70%

-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부담 완화
 -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0~5세 자녀를 둔 여성농업인의 영농일손을 덜어줄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06년부터 농지소유규모 5ha미만 농어가로 신규로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지원단가를 '06년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액의 25%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육아비용 부담 경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출산도우미 이용료 현실화(천원/일)	30	35	35	35	35	35	
○ 출산도우미 이용기간 연장(일)	30	60	75	90	90	90	
○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천명)	-	4	14	15	15	14	
○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지원 (인력지원단, 개소)	9	9	9	9	9	9	
○ 간병, 교육도우미 지원(천명)	-	-	-	15	15	16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천명)		48.3	46.1	43.2	40.6	38.1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여성정책과, 농협중앙회, 지방자치단체

4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확충

현황 및 문제점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 ('01) 4개소 시범운영 → ('02~'03) 18 → ('04) 27 → ('05) 34
-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가정과 영농 고충해소를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기능 부재
 - 사회 각 분야에서는 여성의 주류화와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욕구 증대
- '05년부터 분권교부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

추진 방향

- 농업노동, 가사노동 및 지역사회 활동 등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상응한 위상 재정립 및 삶의 질 제고
 - 여성농업인을 위한 모임, 배움,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서비스 기능 수행

추진 계획

- '08년까지 전국 시·군당 1개소 수준인 163개소 운영 지원
 - 지원계획 : ('05) 34개소 → ('06)73 → ('07)99 → ('08)163
 -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운영중인 농촌보육정보센터 등도 포함
 -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 확보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개편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07년까지)
 - 농촌형복합기능 수행, 보육사업 개선방안 등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센터운영 지원 확대(개소)	34	73	99	163	163	163	
○ 센터 기능개편 조사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여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

5]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04년부터 농지소유규모 1.5ha미만 농업인자녀(0~5세)를 대상으로 보육 시설 및 유치원이용 아동에게 일정액의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지원 아동은 제외
 -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의 50% 수준(5세아는 100%)
- '05년에는 지원대상을 2ha미만으로 확대(월평균 31천명, 44,724백만원)
- 농업인 입장에서는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 제기
 - 전업농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규모화된 젊은 층 배제는 불합리
- 도시 근로여성은 출산으로 인한 휴가 또는 휴직에 따른 급여를 지원 받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

추진 방향

-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를 위해 직접지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 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어촌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 및 출산율 저하에도 대응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양육비 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
-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출산 관련 지원에 있어 도시 근로여성 지원수준으로 상향조정

추진 계획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06년에 농지소유규모 5ha미만 농어가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
 -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보육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도시 근로여성에 상응한 육아지원 방안 마련
 - 중장기적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도 산전 후 유급휴가, 유급휴직 등 출산관련 지원제도 도입
 - 의원 입법 추진이 가시화되면 관계부처 협의 추진

추진 일정

주요 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천명)	31.1	27.3	26.0	24.4	22.9	21.6	
○ 도시취업여성 수준 육아지원 방안 마련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여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

6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은 지역에 따라 아동이 분산되어 있고, 이동거리로 인한 시설 접근성 제한 등 보육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
 - 전국 491개 읍면지역에 보육시설이 없고, 농어업인의 자녀중 보육 시설 미이용 아동이 약 43%
- 농업은 타산업에 비해 작업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영농형태와 품목, 계절에 따라 불규칙적인 보육수요 발생
 -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시간제 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시설이 거의 없음
- 도시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소득활동이 부정기적이므로 보육 시설 이용에 경제적 부담이 큼

추진 방향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 접근성 제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보육서비스 제공

추진 계획

-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정부의 매년 100개소씩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에 따라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 기존 유희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하는 등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20명내외) 시설로 설치
-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형 보육, 차량운영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시간연장형 보육, 차량비 우선 지원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여성정책과, 여성가족부

7] 여성농업인의 문화여건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도시에 비해 농촌의 문화센터나 문화서비스는 공적, 사적 영역 모두에서 취약
- 특히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와 젊은 인구의 감소로 세대간 문화의 차이와 갈등이 심함
- 기존에 여성농업인들이 보유한 다양한 문화도 사라질 위기

추진 방향

- 문화공동화로 인한 농어촌문화의 피폐화를 예방하고, 문화적 소외의 해소와 참여형 문화를 통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
- 사라져 가는 농어촌문화의 보존과 전통의 계승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지역참여와 지역공동체 유지 역할 확대

추진 계획

- 지역농협 문화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여성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확대
- 농어촌지역의 농업인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뮤지컬 순회공연 지원
 - 매년 10개이상 시·군지역에 40여회 공연
- 여성농업인이 주축이 된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 문학회, 독서회, 전통놀이 등 다양한 소모임 활동 유도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문화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확대							
○ 뮤지컬 순회 공연(회)	40	40	40	40	40	40	
○ 문화 소모임 지원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여성정책과, 농진청 농촌자원과, 농협중앙회

8 농촌종합문화복지관 모델 개발 및 보급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지역 문화 복지시설이 도·시·군 소재지에 집중되어 있어 읍·면지역 농업인 등의 접근성이 떨어짐
- 복지관련 각종 사업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량도 도시지역에 비해 미미
 - ※ 농촌지역 문화·복지사업 현황 : 별첨
- 육아·청소년·문화시설도 도시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
 - 교육서비스 만족도 : 농산어촌 11.9%(도시 29.5%)
 -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 농산어촌 9.6%(도시 21.7%)
- 농촌인구 감소로 관공서 등 농촌지역 유휴시설 증가
 - 지자체별로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토록 추진
- 마을단위 주민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돌봄 형태의 복지활동은 노령화 급증으로 공급 부족

추진 방향

- 농촌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을 위한 농촌 종합문화복지정책 실현
- 찾아가는 복지, 생산적 복지, 주민참여형 복지 실현으로 농업인 등의 실질적인 삶의 질 제고
- 농업인 등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면소재 농촌 종합 문화복지관 모델 개발 및 보급 추진

추진 계획

- 면단위 농촌종합문화복지관 모델을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설립 확대 추진
 -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건강·의료·보육·문화·청소년 등 각종 문화복지 관련시설과 사업을 연계하여 종합 운영하는 농촌 종합문화복지관으로 활용토록 개편
 - 농촌실정에 맞는 농촌 종합문화복지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06년중 농촌복지·문화 사업 운영 효율화와 관련시설 연계 방안에 대하여 부처간 협의 추진
 - 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종합 운영이 용이한 시설부터 점진적으로 추진
 - ※ 종합운영 또는 연계 대상시설 <예시>
 - 여성농업인센터, 아동지원센터, 재가복지지원센터, 건강가정센터, 지역농협 문화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 마을단위 자체적으로 주민 상호간 실시하는 돌봄 형태를 공공의 복지 시스템으로 체계화
 - 개인적으로 이웃을 돌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도우미인력 자원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06년부터 시행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추진
- 농촌부락과 종합문화복지관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확보
 - 면단위 종합문화복지관 당 1대씩 셔틀버스 운영
- 농촌문화복지업무를 담당할 인력 양성
 -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농촌복지학과 신설('08년부터)
 - 사회복지사, 농협 도지역본부의 인력지원단 등록회원 등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농촌종합문화복지관 모델 연구 -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실시							
○ 농촌종합문화복지관 모델 제시 및 보급							
○ 마을단위 돌봄시스템 체계화							
○ 농촌복지담당 전문인력 양성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사회과·여성정책과,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 참 고 >

농촌지역 복지관련 사업 현황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보건복지부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과견 시설 등	지방이양
	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위탁	“
	사회복지관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조직, 교육·문화, 자활	“
	재가복지봉사센터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자활, 보호, 복지, 교육 등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가정문제예방, 상담, 문화운동 전개 가정폭력 상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근로능력있는 취업대상 자활기술, 용자, 교육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에서 결정한 여가, 문화, 복지사업	
농림부	여성농업인센터	농어촌여성 교육, 보육	지방이양
지자체	보육정보센터	취약전 어린이 보육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종합복지센터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보호, 의료지원	

라.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1]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추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추진체계 정비
 - 국가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도 시·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개선('05. 11. 5 시행)
-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추진 기반이 취약
 - 도의 경우 여성농업인육성 정책 담당자가 1명 수준이고, 중앙정부의 사업지침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독자적 예산확보 사업이 제한적
- 여성농업인단체장 및 전문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실태는 아직 미흡
-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공무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은 아직 낮은 수준

추진 방향

-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과 발전적 정책 수행 인프라 확충
 - 중앙과 지방간 정책 전달 체계의 확립 및 지방의 정책 수행 역량 강화
 - 관련기관·단체 협의회를 통한 양방향 정책시스템 구축
- 정책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 정책의 체계적 추진기반 구축
 -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계획을 '06년 1/4분기중 수립토록 지도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정책 전담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정책개발 기능 강화
 -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조례제정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

- 여성농업인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화(분기 1회)
 - 농정 이해 확산, 현장 의견수렴 및 상시 협의채널 유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조체제 강화
 - 행정기관, 농협 등 민간기구, 여성농업인단체 등이 참여
- 기본계획의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발전방안 모색
 - 매년 사업실적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환류
 - 2차 5개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중간평가는 '09년 상반기에 실시하여 3차계획 수립 준비
-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공무원 교육 강화
 - 매년 50명이상 실시(농업연수원), '07년부터 2회(100명)로 확대 실시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시·도계획 수립('06 1/4분기)		■					
○ 지자체 전담인력 보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	■	■	■	■	
○ 협의회 정례화 및 지역협의체 운영		■	■	■	■	■	
○ 2차계획 중간평가					■		
○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교육(명)	50	50	100	100	100	100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여성정책과, 농업연수원, 지방자치단체

2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

현황 및 문제점

-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마련
 - 「여성발전기본법」에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규정
 - 중앙·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04년부터 평가 제도 시행 의무화
- 농업정책 추진에 있어 의도적으로 여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

추진 방향

- 양성평등관점(gender-sensitive)에서 농림사업 추진 유도
 -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해당 정책에 환류

추진 계획

- 농림사업, 법령 등에 여성농업인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양성평등 관점 개선 유도
 - 기존에 추진중인 모든 사업 및 제도에 대해서는 '07년까지 평가 완료
 - 신규사업 도입시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
- 추진체계
 - 여성정책과 : 평가추진계획 수립 등 평가업무 총괄
 - 정책수행부서 : 평가실시,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 기존 사업 및 제도							
- 신규사업							

업무담당 부서

- 농림부 여성정책과, 정책담당부서

3 성 인지적 통계의 생산과 활용

현황 및 문제점

- 성 인지적 통계는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보여주고 정책결정과 입안, 실행, 평가에서 성별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필수적 도구
 - 제3차 여성발전을 위한 FAO(세계식량농업기구) 행동계획은 정책입안자 및 업무담당자들이 갖춰야 할 성인지적 통계의 필요성을 제기
- 여성농업인 관련 기초 통계자료는 생산·활용이 저조
 - 5년마다 실시하는 농업총조사는 농가단위와 가구주 중심으로 조사함에 따라 여성농업인 개인의 농업활동 파악이 곤란

추진 방향

-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통계 생산
- 정책 입안, 결정, 평가단계에서 성별통계 및 자료 활용 인식 확산

추진 계획

- 각종 농업정책 추진시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생산·활용 유도
 - 정책 입안, 결정시 성별 통계자료 활용 촉구
 - *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
 - 5년주기 농업총조사에 여성농업인 관련 조사사항 포함 요구
 - 「농업통계 개선 종합대책」과 연계 및 관련기관 협의 추진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08년에 실시
 -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등의 구조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시계열적 조사를 실시하여 3차 5개년계획에 반영
 -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일정으로 실태조사 실시

추진 일정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생산·활용 유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여성정책과·통계기획담당관실, 지방자치단체

4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개발

현황 및 문제점

- 농림부와 농진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등에서 여성농업인육성 정책개발을 위한 위탁용역사업 또는 자체연구 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성농업인 연구는 미미한 수준
- 여성농업인 기초연구 및 정책관련 연구물이 양적으로 적고, 연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에 한계

추진 방향

-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성 인지적 농업정책 개발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성농업인 정책 연구기반 확충

추진 계획

- 농림부는 매년 2과제이상 정책개발 연구 수행
 - 정책개발 연구비를 일정 부분 확보하여 정책대안과 실천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하는 연구 지원
-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전문분야별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확대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성농업인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비를 확충
 - * 자치단체별로 정책개발 연구계획 수립 시행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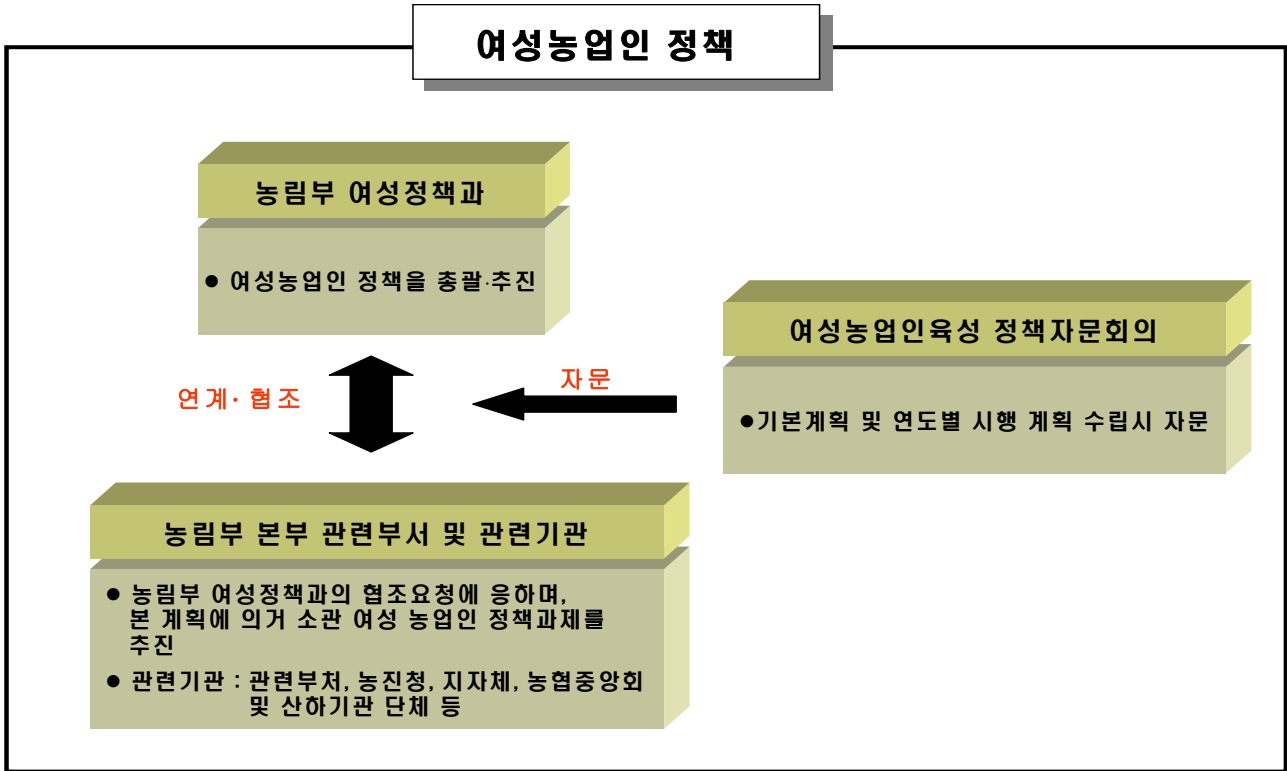
주요업무	'05	5개년('0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농림부 정책개발 과제	5	2	2	2	2	2	
○ 농자연 전문분야 연구 확대							
○ 지자체 지역 연구기반 확충							

업무담당부서

- 농림부 여성정책과, 농진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경제연구원, 지방자치단체

IV. 추진체계

□ 추진부서



□ 시·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구분	주체	내용	비고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	시·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기본계획)에 따라 5년단위 「시·도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시·도계획)을 수립·시행 ○ 기본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과제 시행에 필요한 투융자 계획도 포함하여 수립 	수립된 시·도 계획은 농림부에 제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농림부 및 시·도지사	○ 기본계획 및 시·도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매년 1월말까지 수립
	소관부서 및 관련기관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작성	매년 1월 15일까지 농림부 여성정책과에 제출
	농림부 여성정책과	○ 소관부서 및 관련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검토·조정하여 총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V. 중장기 투융자 계획

1. 연차별 투융자 계획

- 계획기간('06~'10)중 총 투융자 규모는 8,503억원 수준
 - 국비는 4,741억원으로 총 투융자 규모의 55.8%, 지방비는 3,762억원으로 전체의 44.2%
 - 보조는 7,211억원으로 84.8%, 융자는 1,292억원으로 15.2%
 - 분야별 지원규모는 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 1,806억원(21.2%), 복지증진 6,694억원(78.7%) 등

< 연차별 투융자 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 투자소요추정				
		'06	'07	'08	'09	'10
계	8,503	1,166	1,624	1,981	1,864	1,868

2. 재원조달 방안

- 국비지원 계획과 국가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 강화
 - 국비지원 재원은 119조 투융자계획에서 마련, 국가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매년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계획 조정 및 신규투자 수요 반영 추진
 -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융자계획에 중점 반영 추진
- 지방비는 국비와 분담비율에 따라 확보하여 시·도 계획에 반영
 - 지방이양 사업의 경우 분권교부세 등을 차질없이 확보

부록

<과제별 담당부서>

과 제 내 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가-1.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인정		
○ 공동 농업경영자로서 지위인정 방안 마련 - 종사지위 분류·정립 연구수행, 적합한 법체계 적용 방안 및 관련 규정 마련, 실제 농업종사 사실확인 규정 마련 - 지위인정 법제화 추진	농진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 구조정책과
○ ‘가족경영협정’ 보급 시범사업	여성농업인단체	농진청 농촌자원과
○ 결혼 후 취득한 농지에 대한 부부공동소유제 인정 활동 전개	여성농업인단체	여성정책과
○ 여성농업인 명의의 농산물출하 및 관리통장 갖기 확산	농협중앙회	
○ 여성농업인의 법률 소송시 법률상담지원과 피해구제 활성화	농협중앙회	
가-2. 여성농업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농림부소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비율 확대	여성정책과	위원회 운영부서
○ 자치단체의 농정관련위원회의 여성위촉비율 확대	지방자치단체	
○ 시·도 여성농업인협의회 운영	여성농업인단체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여성참여 확대	농촌진흥과	
가-3.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		
○ 여성농업인의 조합원·대의원·임원 참여 확대	농협중앙회	
○ 협동조합의 여성분과위원회를 전 조합에 설치	농협중앙회	
○ 조합원 관련 행사 및 교육시 농협사업 참여 확대 지도 강화	농협중앙회	
○ 여성대의원·여성임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농협중앙회	
○ 여성농업인 참여율이 높은 작목반을 지원대상 조직으로 선정 우대	유통정책과 농협중앙회	
○ 작목반 운영에 품목별 여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농협중앙회	

과 제 내 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가-4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 여성농업인단체 회원교육 지원	여성정책과 농진청 농촌지원과 농협중앙회	경영인력과
○ 여성농업인단체 연구활동·정책제안 지원	여성정책과 농진청 농촌지원과	지방자치단체 농진청 농촌자 원개발연구소
○ 우수여성농업인 발굴 포상	여성정책과	
○ 여성농업인 및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교류사업 지원	여성정책과	관련단체
가-5. 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		
○ 지역농협문화복지센터에서 정보교환, 유대관계 형성 및 한국문화 교육 추진	농협중앙회	
○ 여성(농업인)단체와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적응 지원	농협중앙회	
○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여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경영인력과
가-6 양성평등의식의 확산		
○ 교육대상별로 교육주관 기관 및 단체가 양성 평등의식 교육 운영 - 여성농업인, 남성농업인·부부단위, 농림공무원	(여성)농업인단체, 지자체 등 교육운 영 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경영인력과
○ 다양한 양성평등 캠페인 전개	여성농업인단체	
○ 농촌마을 여성이장을 30%이상 확대	지방자치단체	
나.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나-1.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및 리더쉽 향상		
○ 품목단체별 전문교육에 여성농업인 20%이상 참여	농업인단체	경영인력과
○ 정보화교육은 교육내용을 전문화·차별화하여 수요자 수준에 맞게 추진	정보화팀	
○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 운영	농진청 농촌지원과	
○ 지역 농과계대학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경영인력과 지방자치단체	

과 제 내 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 농업경영컨설팅에 여성농업인 20%이상 참여	경영인력과	
○ 해외연수는 선도 여성농업인 체험단 구성 운영	여성농업인단체 여성정책과	경영인력과
○ 여성농업인 전문강사요원 양성	농업연수원	여성정책과 경영인력과
○ 여성 농정위원 전문성 강화	농업연수원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경영인력과
나-2. 후계여성농업인력 육성기반 확충		
○ 저연령·고학력 집단의 여성농업인을 집중 육성	경영인력과	여성정책과
○ 45세미만 기존 농업인은 후계농으로 선발하여 종합자금으로 지원	경영인력과	여성정책과
○ 쌀 전업농 선정시 일정요건(2ha이상, 55세이하) 을 갖춘 여성농업인 우선 선발	농산경영과	여성정책과
○ 부부창업농, 부부후계농으로 우선선발 및 우대 지원 제도 마련	경영인력과	여성정책과
○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농촌관광, 농산물가공·유통 ·농촌복지 등 학과 신설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성정책과
나-3. 여성농업인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의 완화		
○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높은 농작업에 대한 기계장치 개발을 강화	농진청 농업공학 연구소	
○ 여성용 농기계 보급현황 및 문제점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농진청 농업공학 연구소	
○ 농기계 개발에 여성농업인 참여 적극 유도, 정보 전달 및 홍보체계 구축	농진청 농업공학 연구소	
나-4.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		
○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농진청 농촌 자원과	
○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농진청 농촌 자원과	
나-5. 농촌개발 리더로서 여성농업인의 전문화		
○ 농촌지역개발 리더 교육과정에 여성인력을 우대	농촌진흥과	
○ 여성농촌체험교사 양성	농업연수원	경영인력과

과 제 내 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다-1. 여성농업인의 연금 및 보험수급권 확대		
○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가입·수급권 확대방안 강구	농촌사회과	연구기관
다-2.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 농어촌주민에 대한 5대암 조기검진 우선 확대	농촌사회과	보건복지부
○ 농어촌지역에 대한 한방의료 확대	농촌사회과	보건복지부
○ 피로회복 시설이 없는 마을 위주로 건강관리실 확대 설치	농진청 농촌 자원과	
○ 농어촌 여성질환에 대한 지원 강화	농촌사회과	보건복지부 농진청 농촌자 원연구소
○ 농업인전문병원 설치 방안을 중기 추진과제로 검토	농촌사회과	보건복지부
다-3. 영농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충		
○ 출산농가도우미제도를 농업인들의 실질적 요구에 부합되게 확대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 사고발생농가 및 고령취약농가 인력지원	여성정책과 농협중앙회	
○ 여성농업인의 영농일손을 덜어 줄 육아부담 완화	여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	
다-4.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확충		
○ '08년까지 전국 시·군당 1개소 수준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개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07년까지)	여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
다-5.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여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	
○ 도시 근로여성에 상응한 육아지원 방안 마련	여성정책과	

과 제 내 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다-6.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여성가족부	
○ 시간 연장형 보육, 차량운영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다-7. 여성농업인의 문화여건 개선		
○ 지역농협 문화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여성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확대	농협중앙회	
○ 농어촌지역의 농업인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뮤지컬 순회공연 지원	여성정책과 농협중앙회	
○ 여성농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농진청 농촌 자원과 농협중앙회	
다-8. 농촌 종합문화복지관 모델 개발 및 보급	여성정책과	관련부처
라.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라-1.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구축		
○ 여성농업인 정책의 체계적 추진기반 구축	여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	
○ 여성농업인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화 (분기 1회)	여성정책과	
○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조체제 강화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
○ 기본계획의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발전방안 모색	여성정책과	계획시행 기관, 단체
○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농업연수원	여성정책과

과 제 내 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라-2.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		
○ 여성농업인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양성평등 관점 개선 유도	여성정책과	정책담당부서
라-3. 성 인지적 통계의 생산과 활용		
○ 각종 농업정책 추진시 여성농업인 관련 자료 통계 생산·활용 유도	통계기획팀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실시	여성정책과	
라-4.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개발		
○ 농림부는 매년 2과제이상 정책개발 연구 수행	여성정책과	
○ 전문분야별 지원방안에 대한 자체연구 확대	농진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지역 여성농업인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참여 확대 및 연구비 확충	지방자치단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현황>

추진과제	신규사업	계속사업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①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인정	○	
② 여성농업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③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		○
④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
⑤ 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	○	
⑥ 양성평등의식의 확산	○	
나.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①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및 리더십 향상		○
② 후계여성농업인력 육성기반 확충		○
③ 여성농업인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의 완화		○
④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	○	
⑤ 농촌개발 리더로서 여성농업인의 전문화		○
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① 여성농업인의 연금 및 보험 수급권 확대	○	
②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	
③ 영농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충	○	
④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확충		○
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
⑥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⑦ 여성농업인의 문화여건 개선	○	
⑧ 농촌종합문화복지관 모델 개발 및 보급	○	
라.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①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구축		○
②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	○	
③ 성인지적 통계의 생산과 활용	○	
④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개발		○
과제수(23)	12	11

<2차계획 수립 추진경과>

일정	추진 내용
'05.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개최(4.26) - 2차 5개년계획 수립 추진 방안 제시 및 논의 ○ 관련기관(부서)·단체에 2차 5개년계획 수립 지침을 제시하고 세부추진과제 발굴 제출 요청(4.30)
'05.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계획 시안 연구용역 계약('05.5.30~9.29 완료)
'05.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과 실무작업을 통해 추진과제 발굴 - 연구진과 2차례 과제 선정 논의(6.14, 6.29)
'05.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자문회의를 개최(7.4) - 5대전략 및 27개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 검토
'05.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계획 시안 연구 중간보고서 접수 및 과제 보완작업 진행
'05.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계획 시안 연구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 한여농 주관 토론회(9.2. 09:30), 전여농(강기갑·현애자의원 공동) 주관 토론회(9.2. 13:30), 농특위 여성정책협의회 주관 논의(9.28. 15:30) - 추진과제 선정안을 관련기관(부서)·단체에 의견수렴(9.14)
'05.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안 마련 및 의견수렴 - 3차 자문회의를 개최(10.6)하여 시안 검토, 논의 - 연구진과 협의(10.17) 및 보완
'05.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11.7~11.22) · 충북(11.7), 경기(11.8), 충남(11.9), 경북(11.10), 제주(11.14), 전북(11.15), 경남(11.17), 전남(11.22) - 지역의견 반영 시안 보완
'05.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관(부서)·단체에 최종 의견 수렴(12.12~12.16) ○ 투융자계획 사전협의(예산처) : 12.23~12.30
'06년 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정책조정실무협의회(주무과장회의) 상정(1.17) ○ 투융자계획 협의 : 재정기획관실(2.27~2.28), 예산처(3.6) ○ 자문회의 개최 및 최종 논의(3.14)